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822호, 2015,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업자의 각종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 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매 출액이 높은 영업자일수록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로 되어 있는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도 유영의 실효성 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축산물가공업 등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인 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 명가에 관한 업무를 축 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

전처 소관) 정종섭

⊙ 대통령령 제2682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21조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을 "제21조제 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도축업 · 집유업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 육포장처리업의 영업 전부정지를 갈음하 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 (단위 :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200 이하	14
3	200 초과 310 이하	17
4	310 초과 430 이하	20
5	430 초과 560 이하	27
6	560 초과 700 이하	34
7	700 초과 860 이하	42
8	860 초과 1,040 이하	51
9	1,040 초과 1,240 이하	62
10	1,240 초과 1,460 이하	73
11	1,460 초과 1,710 이하	86
12	1,710 초과 2,000 이하	94
13	2,000 초과 2,300 이하	100
14	2,300 초과 2,600 이하	106
15	2,600 초과 3,000 이하	112
16	3,000 초과 3,400 이하	118
17	3,400 초과 3,800 이하	124
18	3,800 초과 4,300 이하	140
19	4,300 초과 4,800 이하	157
20	4,800 초과 5,400 이하	176
21	5,400 초과 6,000 이하	197
22	6,000 초과 6,700 이하	219
23	6,700 초과 7,500 이하	245
24	7,500 초과 8,600 이하	278
25	8,600 초과 10,000 이하	321
26	10,000 초과 12,000 이하	380
27	12,000 초과 15,000 이하	466
28	15,000 초과 20,000 이하	604
29	20,000 초과 25,000 이하	777
30	25,000 초과 30,000 이하	949
31	30,000 초과 35,000 이하	1,122
32	35,000 초과 40,000 이하	1,295
33	40,000 초과	1,381

나. 도축업 · 집유업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 육포장처리업 외의 영업의 영업 전부정지 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 (단위 :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 만원)
1	20 0	하 5
2	20 초과 30 이	하 8
3	30 초과 50 이	하 10
4	50 초과 100 이	하 13
5	100 초과 150 이	하 16
6	150 초과 210 이	하 23
7	210 초과 270 이	하 31
8	270 초과 330 이	하 39
9	330 초과 400 이	ōト 47
10	400 초과 470 이	하 56
11	470 초과 550 이	하 66
12	550 초과 650 이	하 78
13	650 초과 750 이	하 88
14	750 초과 850 이	하 94
15	850 초과 1,000 이	하 100
16	1,000 초과 1,200 이	하 106
17	1,200 초과 1,500 이	하 112
18	1,500 초과 2,000 이	하 118
19	2,000 초과 2,500 이	ō} 124
20	2,500 초과 3,000 이	하 130
21	3,000 초과 4,000 이	하 136
22	4,000 초과 5,000 이	하 165
23	5,000 초과 6,500 이	ਰੇ 211
24	6,500 초과 8,000 이	ਰੇ 266
25	8,000 초과 10,000 이	하 330
26	10,000 초:	과 367

다. 품목류 · 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하여 과징 금을 부과하는 경우

		프모르 . 프모 제조저지
등급	연간매출액 (단위 : 백만원)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단위 : 독단단)	의 금액(단위: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200 이하	14
3	200 초과 300 이하	16
4	300 초과 400 이하	19
5	400 초과 500 이하	24
6	500 초과 650 이하	31
7	650 초과 800 이하	39
8	800 초과 950 이하	47
9	950 초과 1,100 이하	55
10	1,100 초과 1,300 이하	65
11	1,300 초과 1,500 이하	76
12	1,500 초과 1,700 이하	86
13	1,700 초과 2,000 이하	100
14	2,000 초과 2,300 이하	106
15	2,300 초과 2,700 이하	112
16	2,700 초과 3,100 이하	118
17	3,100 초과 3,600 이하	124
18	3,600 초과 4,100 이하	142
19	4,100 초과 4,700 이하	163
20	4,700 초과 5,300 이하	185
21	5,300 초과 6,000 이하	209
22	6,000 초과 6,700 이하	235
23	6,700 초과 7,400 이하	261
24	7,400 초과 8,200 이하	289
25	8,200 초과 9,000 이하	318
26	9,000 초과 10,000 이하	351
27	10,000 초과 11,000 이하	388
28	11,000 초과 12,000 이하	425
29	12,000 초과 13,000 이하	462
30	13,000 초과 15,000 이하	518
31	15,000 초과 17,000 이하	592
32	17,000 초과 20,000 이하	684
33	20,000 초과	74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 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에 관하여 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